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15호 2018. 3. 23(금)

선 람	기관의 장

고시

- 남원시 고시 제2018-30호 남원시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시행계획변경 고시 ----- 1
- 남원시 고시 제2018-31호 사도개설 허가내용 고시 ----- 3

공고

- 남원시 공고 제2018-135호 남원시 어린이교통공원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 ----- 4
- 남원시 공고 제2018-500호 공인 등록 공고(통합민원발급기 설치에 따른 공인 등록) ----- 6
- 남원시 공고 제2018-523호 도로지정공고(향교동 322-8 외 1) ----- 8
- 남원시 공고 제2018-529호 「남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 9

회 람										
--------	--	--	--	--	--	--	--	--	--	--

남원시 고시 제 2018 - 30호

남원시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시행계획변경 고시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시행계획변경 내용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8. 03. 20.

남 원 시 장

1. 사업의 명칭 :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2. 사업의 목적

“남원 이너뷰티 식품산업 육성” 을 통한 특화된 이너뷰티 식품산업 브랜드 창출과 새로운 고부가가치 육성으로 농촌지역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하여 농촌지역 활력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3. 계획의 개요

가. 사업위치 : 남원시 주천면 용담리(이너뷰티 식품가공시설GMP) 및 동부권 일원

나. 사 업 비 : 8,000백만원(국 5,600, 시 2,400)

다. 사업기간 : 2016년 ~ 2018년(3년간)

라. 사업시행자 : 남원시장

마. 주요 사업내용

- 이너뷰티 식품가공시설(GMP) 사업/ 이너뷰티 창업지원사업/
이너뷰티 신(新)소농 삶터조성/ 이너뷰티 식품산업 박람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농정과에 비치된 시행계획서 열람가능
(남원시 농정과 농촌개발계 ☎063-620-6394)

■ 시행계획 변경 세부사업 내용

■ 변경 ■ 신규, [단위 : 백만원 / () 외서 자부담]

구 분		시행계획(당초)		시행계획(변경)			증감	
		세부사업		세부사업		사업비		
이너뷰티식품 가공시설 조성	H/W	이너뷰티식품 가공시설 조성		3,900	이너뷰티식품 가공시설 조성		4,444	544
	H/W	이너뷰티식품 창업지원		900 (180)	이너뷰티식품 창업지원		900 (180)	-
이너뷰티식품 창 업지원	H/W	이너뷰티식품 현대화사업		300 (60)	이너뷰티식품 현대화사업		280 (56)	▲ 20 (▲ 4)
		창업지원 교육 및 컨설팅	창업아카데미	100	창업지원 교육 및 컨설팅	창업아카데미	100	-
	창업컨설팅		60	창업컨설팅		40	▲ 20	
	이너뷰티식품 제품개발	컨셉제품 개발	300	이너뷰티식품 제품개발	컨셉제품 개발	200	▲ 100	
		연구개발 지원	220		연구개발 지원	170	▲ 50	
		GMP컨설팅	30		GMP컨설팅	30	-	
	브랜드화 지원	브랜드 개발	50	브랜드화 지원	브랜드 개발	50	-	
		포장용기 제작	100		포장용기 제작	100	-	
	홍보마케팅	관측지원	295	홍보마케팅	관측지원	295	-	
		공동마케팅 지원	200		공동마케팅 지원	200	-	
		-	-		공동마케팅 전략수 립	40	40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추진단 운영	10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추진단 운영	40	30	
		사업단 운영	144		-	-	▲ 144	
		시행계획 컨설팅	50		시행계획 컨설팅	50	-	
이너뷰티 신(新)소농 삶터조성 사업	H/W	삶터 기반조성 지원		200	삶터 기반조성 지원		100	▲ 100
		전기 및 상하수도 정비 지원		100	전기 및 상하수도 정비 지원		50	▲ 50
이너뷰티 식품산업 박람회	S/W	-		-	춘향제 홍보부스 운영		35	35
		국내 식품산업 박람회 참가지원		105	국내 식품산업 박람회 참가지원		80	▲ 25
		국외 식품산업 박람회 참가지원		60	국외 식품산업 박람회 참가지원		40	▲ 20
부대비용		계획, 설계, 공사감리, 사업관리, 잡지출 등		876	계획, 설계, 공사감리, 사업관리, 잡지출 등		756	▲ 120
합 계	하드웨어(H/W) 합계		5,400 (240)	하드웨어(H/W) 합계		5,774 (236)	374 (▲ 4)	
	소프트웨어(S/W) 합계		1,724	소프트웨어(S/W) 합계		1,470	▲ 254	
	부대비용		876	부대비용		756	▲ 120	
	총 합계		8,000 (240)	총 합계		8,000 (236)	- (▲ 4)	

남원시청 고시 제2018 - 31호

사도개설 허가내용 고시

「사도법」 제4조에 의하여 사도개설 허가가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위치 : 남원시 식정동 429
2. 사업목적 : 농업시설 조성에 따른 진·출입로를 위한 사도 개설
3. 공사개요 : 연장 L=117.0m, 폭 B=7.0~16.0m (Con`c 포장)
4. 공사시행기간 : 2018. 04. ~ 2019. 03.
5. 공사실시방법 : 토목공사 일반시방서에 의거 실시
6. 허가기관 : 남원시청
7. 허가년월일 : 2018. 03. 20.
8. 피허가자의 주소·성명 : 이경순(남원시 중갈치안길 13-6)
9. 기타사항 : 사도설치 허가사항 조건에 준함

2018년 03월 23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공고 제2018 - 135호

남원시 어린이교통공원 CCTV 설치 행정예고

남원시 어린이교통공원 내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22일

남 원 시 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어린이교통공원 내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한 CCTV 설치에 대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설치장소 : 남원시 이백면 이백로 333 (어린이교통공원 내)

3. 예고기간 : 2018. 3. 22. ~ 4. 12.(21일간)

4.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46조

5. 공고방법 : 남원시청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및 게시판 게재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8. 4. 12.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 또는 팩스
- 제출서식 : 【첨부】 참조
- 제출 및 문의처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교통과

(☎ 063-620-6576, FAX 063-620-6718)

7. 기타사항 :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사 업 명	남원시 어린이교통공원 CCTV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 장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남원시 어린이교통공원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남원시공고 제2018-500호

공인 등록 공고

남원시 공인 조례 제6조(공인의 신조, 개각) 규정에 의한 공인 신조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9조(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9일

남 원 시 장



□ 공인 신조 등록

1. 공인 등록사유 : 통합민원발급기 설치에 따른 공인 등록
2. 공인 등 록 일 : 2018. 3. 19.
3. 관련 조 례 : 남원시 공인조례 제6조
4. 등록 공인명 및 인영

구 분 (폐기/등록)	공인명	규격·서체 (cm)	재질	인영	관리부서
등록	남 원 시 장 인 주 천 면 전 용 (1)	3.0cm×3.0cm 정방형 한글전서체	NBR		주천면
등록	남 원 시 장 인 주 천 면 전 용 (2)	3.0cm×3.0cm 정방형 한글전서체	NBR		주천면
등록	남 원 시 주 천 면 장 인 통 합 민 원 전 용 (1)	2.1cm×2.1cm 정방형 한글전서체	NBR		주천면
등록	남 원 시 주 천 면 장 인 통 합 민 원 전 용 (2)	2.1cm×2.1cm 정방형 한글전서체	NBR		주천면

구분 (폐기/등록)	공인명	규격·서체 (cm)	재질	인영	관리부서
등록	남원시 시장인 금지면 전용(1)	3.0cm×3.0cm 정방형 한글전서체	NBR		금지면
등록	남원시 시장인 금지면 전용(2)	3.0cm×3.0cm 정방형 한글전서체	NBR		금지면
등록	남원시 금지면장인 통합민원전용(1)	2.1cm×2.1cm 정방형 한글전서체	NBR		금지면
등록	남원시 금지면장인 통합민원전용(2)	2.1cm×2.1cm 정방형 한글전서체	NBR		금지면
등록	남원시 시장인 산내면 전용(1)	3.0cm×3.0cm 정방형 한글전서체	NBR		산내면
등록	남원시 시장인 산내면 전용(2)	3.0cm×3.0cm 정방형 한글전서체	NBR		산내면
등록	남원시 산내면장인 통합민원전용(1)	2.1cm×2.1cm 정방형 한글전서체	NBR		산내면
등록	남원시 산내면장인 통합민원전용(2)	2.1cm×2.1cm 정방형 한글전서체	NBR		산내면

◎ 남원시 공고 제2018-523호

도로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9일

남 원 시 장

○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정 번호	대 지 위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번호	도로 길이 (m)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	이해관계인		
							지 번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2018-	남원시 향교동 322-8외1	허현*	2018-건축과- 신축허가-20	33	3	98	남원시 향교동 322-6	80	이경*
							남원시 향교동 322-10	18	이경*

남원시 공고 제2018-529호

「남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0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남원지역에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
- 도시와 농촌의 상생·순환관계를 확립하여 농촌경제의 자립과 자연친화적인 안전한 먹거리 제공
-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2. 주요내용

○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계획 실행

- 로컬푸드 기획생산을 위한 농가 조직화 및 교육·홍보·컨설팅 추진
- 로컬푸드 연중 생산·출하를 위한 생산·유통시설 지원

○ 로컬푸드 소비촉진 활성화

- 농산물 직거래 장터 활성화 및 직매장 설치
- 건강한 학교밥상 실현
-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 추진
- 로컬푸드 협력체계 구축 등 등

3. 의견제출

-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원예허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남원시장 (참조 : 원예허브과장)

- 주소 : (55738)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남원시청 원예허브과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45), 직접 방문, 컴퓨터 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원예허브과(☎063-620-62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8. 03.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원예허브과장

1. 제정이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남원지역에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 환경의 보전과 주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기본이념을 규정함 (안 제1조~ 안 제3조)
- 나.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안 제6조)
- 다. 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안 제15조)
- 라.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안 제17조)
- 마. 로컬푸드 소비촉진 활성화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안 제20조)
- 바. 로컬푸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 안 제2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3. ~ 2018. 3.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남원지역에서 생산·가공된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 환경의 보전과 주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남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원로컬푸드”(이하 “로컬푸드”라 한다)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가공하여 직거래 또는 최소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농·식품을 말한다.
2. “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집단 개념을 말한다.
3.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가공자·유통자·소비자를 말한다.
4. 그 밖에 용어의 뜻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를 따른다.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순환관계 확립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범주민적 지역공동체 운동으로 농촌경제의 자립과 주민의 식량주권 확보라는 공공의 목표를 갖는다.

2. 로컬푸드는 지역 내 다품목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가족소농, 영세농, 귀농인 및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하여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
3. 로컬푸드는 자연친화적 생산과 먹을거리 이동거리의 최소화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향한다.

제2장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제4조(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육성·지원계획 실행)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육성·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예산에 육성·지원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지원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개선·정비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로컬푸드 육성사업 지원)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7조(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로컬푸드 정책 아이디어 제공에 관한 사항
3. 민간 차원의 소비촉진 운동 전개와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로컬푸드 업무부서장, 친환경농업 업무부서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마을 및 지역공동체 등 생산분야 단체 대표
2. 로컬푸드 관련 분야별 (유통·가공·생산) 대표
3. 로컬푸드 관련 주민사회단체
4. 전라북도 남원교육지원청 학교급식 담당

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컨설팅기관 등 전문가

6. 그 밖에 로컬푸드 관련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추천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한다.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로컬푸드 업무담당자이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제13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기관·단체에게 자료의 제출, 위원회 출석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로컬푸드의 인증

제16조(로컬푸드 인증)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안전성과 이동거리 단축을 위하여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식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로컬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의 고유성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주체와 공동 또는 연합하여 농식품의 생산·유통·판매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의 표준화 및 공동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도 병행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로컬푸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 심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인증의 기준 신청·표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인증의 취소) ① 시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생산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로컬푸드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생산자 등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장 로컬푸드 소비촉진 활성화

제18조(농산물 직거래 장터 활성화 및 직매장 설치) ① 시장은 농민의 소득증대 및 로컬푸드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농산물 직거래 장터(이하 “장터”라 한다)를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터 개설 시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 또는 전라북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터활성화를 위하여 순회수집·소포장·홍보지원과 장터에 참여한

농가 및 업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건강한 학교밥상의 실현) 시장은 지역 내 학생들에게 건강한 학교 밥상을 위해 로컬푸드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공공기관 및 단체 급식) ①시장은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에 로컬푸드 농·식품이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농촌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단체 등에 로컬푸드 농·식품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된 기관·단체 등에서는 농·식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로컬푸드 협력체계 구축

제21조(로컬푸드 참여주체의 책임) ① 시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장은 인증식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식생활 교육·홍보 및 자료조사와 인력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인 주민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증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인 농업인은 생산주체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인증 취득 및 유지를 통해 로컬푸드 이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인증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여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그리고 소비자인 주민의 건강이 식생활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22조(분야의 국내외 협력) ① 시장은 특정 농식품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근 시·군과 협약을 체결하여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먹을거리를 조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분야의 국내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인력·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내외 활동의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